<공고 제2024 - 22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4차 직원채용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8. 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채용분야

※ **직무기술서 참조**

채용분야		근무지역	채용인원	업무내용	우대사항
무기계약직	전문업무직 라급 (예방교육)	서울 본원	1명	• 의료분쟁 관련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 의료분쟁 사건데이터 점검·관리, 분석 • 의료사고 예방자료 관련 업무 등 행정	* 통계 분석 및 실무 경험자 * 보건 의료·정책 연구(지원) 경험자 * 간호사 등 종합병원 이상 근무 경력자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일반업무직 라급 (경영기획)		1명	• 일반행정 - 경영기획·관리, 예산, 대내외 협력 등 ※ 계약기간: '24.10.14.~'25.10.31.(약 13개월)	
(공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 •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쟁해결 관련기관 근무 경험자 등 우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근로 계약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연장·조기 종료 가능**			

2 응시자격

○ 다음, 의료중재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음장 계속)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61조>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3 채용 분야별 자격기준

직급	채용자격기준
무기계약직 - 전문업무직 라급	1. 간호사 면허 취득자 2.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자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 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채용자격기준 해당여부는 응시지원서의 경력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서류심사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며, 자격 미달자는 면접 또는 임용취소

4 근로조건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

□ **(급여수준)** 우리 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산정

(성과등급 양호(B)등급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업무직 라급	58,210	31,223
일반업무직 라급	56,727	30,519

* 제수당 미포함

□ **(근무장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 본원

5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심사 방법

응시지원서는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유효한 경력(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발급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경력사항에 기재**하고 증명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경험사항에 기재

※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 가점사항 등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와 내용이 다른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 취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4. 8. 22.(목) ~ 9. 5.(목) 18:00 까지 (15일간)

○ 응시지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채용페이지(k-medi.recruiter.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식

※ 종료시간 이후 응시원서 접수 웹페이지 자동폐쇄,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1차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의 지원동기, 경력사항,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면접대상자 선발, 동점자는 정해진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면접 기회 부여

○ 1차(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 '24. 9. 13.(금)

※ 상기일정은 예정일로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2차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60%+직업기초능력20%+기타20%)

○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성, 성취지향성 등을 종합심사

○ 면접(예정)일 : '24. 9. 26.(목) ~ 10. 1.(화) 중 1일

※ 서류심사 결과발표 시 면접일정 등을 확정하여 발표하며 일정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해 선발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시험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 / 3.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 ~ '24. 10. 4.(금)

※ 상기일정은 예정일로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임용일 : '24. 10. 14.(월)

□ 채용결과 이의신청

○ 불합격자는 채용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접수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이의신청 절차 ≫

① 채용페이지(k-medi.recruiter.co.kr) - 공지사항 – 신청서식 다운・작성(자필서명)
② 채용페이지(k-medi.recruiter.co.kr) - 지원자 Q&A - 이의신청서 업로드・제출

※ 이의제기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 사안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기한 경과의 경우 일반 질의로 이관 처리 또는 종료
※ 이의신청 처리 종료 후 SMS 또는 이메일로 안내되며 채용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① 해당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관련 타 법령이나 의료중재원 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6 가산점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응시자 이름으로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필수 지원 자격은 가산점 비대상(보훈제한경쟁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심사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상한제 적용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사단계별 만점의 5% 가산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 중인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알리오기준)

□ **(청년인턴)** 의료중재원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는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7 제출서류

응시 전 증명서류 사전준비 필수, **응시서류는 증명서류와 일치되도록 작성,**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 착오기입의 경우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증명서류 제출기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2~3일 이내

□ **응시서류** :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정양식)

□ **증명서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시스템에 업로드)

<<공통서류>>

○ 증명사진(**JPG파일**, 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
○ 경력증명서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가급적 관련 수행업무 명시)
  * 근무경력, 기간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필요 시 4대 보험 자격 득실(2종 이상)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이력 확인용)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 및 면허)
  * 간호사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신고증' 추가 제출

(다음장 계속)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수료)증명서

1) 법학, 보건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2)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대상자 필수

* 분교의 경우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추가제출

○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확인서 (※ 모든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 제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응시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거나 허위・착오 기재의 경우(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자격요건 미달, 가점사항 등)에는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자료는「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생년월일, 학교명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원자(합격자 제외)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및 당사자의 자발적 제출의 경우는 제외되며 서류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8 기타 사항 (확인 필수)

□ 응시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비위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기초심사자료, 성명, 연락처는 보관합니다.

□ **응시서류 누락 및 착오기입, 연락(SMS, E-mail)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만을 유효경력으로 인정하여 임용 시 연봉에 반영함. 지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입사 후 최초 경력 산정 및 경력 재획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단, 군경력 제외)

○ **근무경력, 기간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 시 4대 보험 가입증명 및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채용은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예정된 임용일부터 반드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에 면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임용일 변경 및 겸직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이후라도 **지원서 허위·착오기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자격요건 미달, 가점사항 등), **부정한 행위자**, 신체검사 부적합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부정한 행위 또는 인사채용 비위로 인하여 임용이 취소 된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우리 원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

○ **단계별 제출서류 누락, 제출기한 미준수**, 임용동의서 미제출의 경우 전형 또는 **임용(전형) 포기로 간주**함

□ **내부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6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 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심사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관련 일반사항, 서류반환, 채용비위 신고 등 문의>

○ 인사담당자 : 02-6210-0134
○ 유선문의 : 평일 08시 ~ 12시, 13시~17시
○ 온라인문의 : https://k-medi.recruiter.co.kr/bbs/appsite/qna/write